

2007. 9.

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 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]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발의자 : 김봉수 의원 (서명또는 ~~본인~~)

외 4인

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의안발의서명서

이상우	3.	
성명중	<del>이상우</del>	
김영선		
강현수		
이은경		

##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169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9. .  
발 의 자 : 김봉수 의원외 4인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문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.(안 제1조)

○ 제1조(목적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를 ⇒ 제33조로 개정

붙임 1.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·구 조문 대비 표 끝.

##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

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2조”를 “제33조”로 개정함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</p> <p>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32조</u> 및 동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 시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</p> <p>..... <u>제 33 조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